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687
----------	------

2026년 6월 16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홍국표 의원(찬성 9명)
- 나. 제안일 : 2026년 5월 26일
- 다. 회부일 : 2026년 5월 27일
- 라. 상정일 :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6년 6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홍국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울시의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의존적 결과이다. 한강을 경계로 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동남권·서남권)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동북권·서북권)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2021년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도심 중심의 산업·업무 기능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기반의 마련으로 이른바 ‘산업 생태계’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으로 확대는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셋째, 균형발전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시에 이미 발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균형발전계획은 일률적 분배가 아니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이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투자 분야가 분야별 추진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해소 관점의 우선 고려 원칙 신설(안 제5조 제2항 신설)
- 나. 분야별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명시(안 제5조 제3항 제3호 나목)
- 다.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의 정비(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하고 기존 분야별 산업·경제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분야를 추가로 명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개정 배경”

-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균형발전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19년에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자치구 간 지역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산업·업무 기능, 일자리 및 투자 기반이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시 일자리·투자 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례개정 타당성”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안 제5조제3항제3호 나목)

- 현행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정의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내용에도 지역격차 실태 분석과 산업·경제 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구분	내 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별"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기반시설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협상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이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선정을 요청한 부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보다 분명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분야별 추진전략에 일차

현행	개정안
나. <u>산업·경제</u> 활성화	나. <u>산업·경제·일자리·투자</u> -----

- 또한 서울시는 현재 「제2차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7~2031) 수립」 1) 용역을 통해 자치구 간 격차의 구조적 원인 분석,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제2차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7~2031)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제1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기본방향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찰) 제1차 지역균형발전 계획(2022~2026)의 5년간 성과 평가 및 고찰 ○ (방향)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연구 동향 검토 ○ (분석) 서울시 내 지역 간 격차 등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안 ○ (계획) 제2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7~2031)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제2부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문화·복지·보건 등) 생활 SOC, 편의시설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확충 ○ (기반시설) 교통·인프라·환경·안전 등 기반시설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확충 ○ (교육) 균등한 교육기회 및 환경 조성 ○ (주거환경) 중심 시가지, 노후 주거지 체계적 정비 및 주택공급 방안 ○ (실행방안)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1) [과업 개요]

- 과업명: 제2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7~2031) 수립 연구
- 과업기간: 2026. 2월~11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수행기관: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의 목적: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관련 연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정책 수요 연구, 서울균형발전 개념 재정립을 통한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과 연계하여 지역 간 격차 실태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수립

-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보다 분명히 고려하도록 하고, 산업·경제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조례는 이미 지역격차 해소, 지역별 특성 고려, 산업·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보완적 성격의 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산업·경제 기반과 일자리·투자 기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현재 「제2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7~2031) 수립」 용역을 통해 자치구 간 격차의 구조적 원인 분석,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평가·환류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정책과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경제 분야의 세부 추진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일자리·투자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8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이상욱, 이종환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울시의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의존적 결과이다. 한강을 경계로 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동남권·서남권)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동북권·서북권)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2021년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도심 중심의 산업·업무 기능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기반의 마련으로 이른바 '산업생태계'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으로 확대는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셋째, 균형발전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시에 이미 발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균형발전계획은 일률적 분배가 아니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이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투자 분야가 분야별 추진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해소 관점의 우선 고려 원칙 신설(안 제5조 제2항 신설)
- 나. 분야별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명시(안 제5조 제3항 제3호 나목)
- 다.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의 정비(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3호나목 중 “산업·경제”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한다.

-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p> <p>① 시장은 <u>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u>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지역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산업·경제 활성화</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사. (생략)</p> <p>4. 5. (생략)</p> <p>③·④ (생략)</p>	<p>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p> <p>① ----- <u>지역균형발전</u>-----</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u>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p> <p>③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산업·경제·일자리·투자</u>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사. (현행과 같음)</p> <p>4. 5.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수정(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하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안 제5조제2항 신설), 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기존 '산업·경제' 부문에 '일자리·투자'를 추가(안 제5조제3항)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며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계획의 검토 기준과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